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SRC, ERC, MRC)
신규과제 신청요강**

2025.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6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SRC, ERC, MRC)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2.(월) 18:00 ※ 신청마감일 : 2026. 2. 2.(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5.(목) 18:00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6.2.2.)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②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등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등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R&D 신문고**

③ '참여(공동)연구원'은 기존 선도연구센터사업에서 '공동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IRIS 상에서 공동연구원을 선택할 때의 용어를 일치시킨 것입니다. 접수 시 연구원 구성의 인력 역할을 선택하실 때, 참여(공동)연구원의 경우 참여연구자(공동)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참여(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④ 2026년도 신규 선도연구센터 지원 분야 중 SRC의 [수학] 분야, ERC의 [소재] 분야는 후속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 ('26.1월 초)이 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규과제 신청 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사전(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붙임2-4]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통한 요건사항 최종 확인 필요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 (SRC/ERC)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 ▶ (MRC)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내 대학으로 연구개시일 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

② 연구책임자의 자격

- ①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 여부(신청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재직)
- ② 연구책임자의 그룹책임자 여부
- ③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보장 여부
- ④ 센터 포함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내 수행 (2책5공)

③ 참여(공동)연구원의 자격

- ① 참여(공동)연구원은 국내외 대학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내외 공공·민간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 ② 그룹책임자는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또는 국내외 공공·민간 연구소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④ 신청 및 참여제한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3책5공 초과여부
- ②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여부
- ③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중복신청 여부
- ④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현재 수행 여부
- ⑤ 현재 리더연구사업 연구책임자의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지원 여부

⑤ 공동연구진 구성

- ▶ (SRC, ERC) 공동연구진 최소 8명 이상 여부
- ▶ (MRC) 공동연구진 최소 8명 이상 여부 및 구성요건 충족 여부

⑥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협약사항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서 제출 여부
- ② 행정전담인력(최소 1명) 지원 여부
- ③ 센터 전용공간 지원 및 최소 조건(495m² 이상) 충족 여부

⑦ 기타 요건

- ▶ (해당 시) 기업 투자금, 지자체 대응자금, 교비대응자금 지원 협약서 제출 여부
- ▶ (MRC)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및 공동연구진 소속 증빙자료 제출 여부

목 차

I. 2026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1
2. 신규과제 지원 분야 및 규모	2
3. 2026년 추진 일정	2
4. 2026년 중점 추진방향	3

II.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기간 및 제출 자료	5
2. 신청 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6
3.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7
4. 연구과제 및 공동연구진 구성	10
5.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및 협약사항	11
6. 기타 사항	12

III.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14
2. 평가 절차 및 방법	14
3. 평가 주안점	15
4. 차별성 검토	15

IV.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개발비 지급	16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17

V. 향후 관리사항

1. 연차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등	18
2. 성과 관리	19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21

VI. 기타 사항

불임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7
	2. 선도연구센터 FAQ	29
	3.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39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분야	44
	5. 선도연구센터 지원목록	48

1 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 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분야	내용
이학분야(SRC) (Science Research Center)	우수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공학분야(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우수한 공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기초의과학분야(MRC) (Medical Research Center)	의·치의·한의·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사람의 생명 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등 국가 바이오·건강 분야 연구 역량 강화
융합분야(CRC) (Convergence Research Center)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신지식 창출
지역혁신분야(RLRC)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지역혁신분야 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 연구역량 강화
혁신분야(IRC) (Innovation Research Center)	우수한 전략기술 분야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역량을 축적하고, 대학 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 사업 지원 내용 및 대상

구분	연구 기간	연간 연구비 (간접비 포함)	지원 대상
이학분야 (SRC)	7년 (4+3)	연 18억원 이내	이공계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8인 이상 연구그룹
공학분야 (ERC)	7년 이내 (자율 설정)	연 22억원 이내	
기초의과학분야 (MRC)	7년(4+3)	연 15억원 이내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자 8인 이상 연구그룹
융합분야 (CRC)	7년 (4+3)	연 15억원 이내	이공계 및 인문·사회·예술분야 등의 대학원이 설치 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지역혁신분야 (RLRC)	7년 (4+3)	연 15억원 이내	이공계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대학의 연구자 8인 이내 연구그룹
혁신분야 (IRC)	10년 (3+4+3)	연 50억원 이내	이공계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그룹으로 동일대학 소속 연구자 13명 내외로 구성

2 신규과제 지원 분야 및 규모

구 분	SRC	ERC	MRC
심사분과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ICT·융합	의약학
선정 규모	3~4개	3~4개	4개
분야(CRB 기준)	① 물리학 1개 ② 기반생명 1개 ③ 기초·분자생명 1개 ④ 수학* 1개(별도 안내)	① 화공 1개 ② 에너지·환경융합·복합+다학제 융합·복합 1개 ③ 전기·전자+통신 1개 ④ 소재* 1개(별도 안내)	① 기초·응용의학 3개 ② 한의학 1개
과제당 연구개발비	연 18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연 22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연 15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지원 기간	7년(4+3년)	7년 이내(자율 설정)	7년(4+3년)
1차년도 연구 기간	2026.7.1. ~ 2027.6.30.(12개월)		

* SRC의 [수학]분야, ERC의 [소재]분야는 후속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별도 안내 예정('26.1월 초)

※ 지원 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

※ ERC 지원 기간은 총 2단계로 구성하되, 2단계 연구 기간은 2년 이상 설정

3 2026년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26. 1. 14.(수) ~ 2026. 2. 2.(월)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 1. 14.(수) ~ 2026. 2. 5.(목)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및 승인 기간
2026. 3월 중	1차 토론평가 실시
2026. 3월 말 ~ 4월 중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2026. 5월 초 ~ 6월 초	2차 발표평가 실시
2026. 6월 중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6. 7. 1.	신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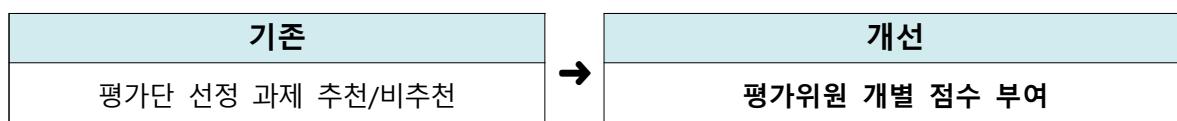
4 2026년 중점 추진 방향

□ 주요 추진 방향

- (선정 주안점) 유형별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한 과제 선정을 위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선정 주안점 적용

구분	선정 주안점
이학분야 (SRC)	국가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문적 파급 효과,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의 특정 목적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집단을 선정·지원
공학분야 (ERC)	학문적 성과와 함께 원천기술 개발, 응용연구 연계 등 성과 활용이 가능한 국가전략분야 씨앗기술 창출 센터를 선정·지원
기초의과학분야 (MRC)	참여(공동)연구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기초의약학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임상/산업체 연계 및 성과 활용 강화로 바이오/건강 R&D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 집단을 선정·지원

- (단가 상향) 대형화되는 집단연구의 규모 및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연구 개발비 단가를 상향, 대학 연구의 우수성과 창출 기회를 확장
※ (SRC) 과제당 16.5억원 → 18억원 / (ERC) 과제당 20억원 → 22억원
- (평가 신뢰도 증진) 평가위원 개별 점수제 도입을 통해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및 평가자 신뢰 증진



- (젊은 연구자 참여 확대) 박사 후 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집단 지원을 통해 차세대 우수 연구자를 양성
- 단계 및 최종 평가 시 젊은 연구자 배출 실적 등을 분석하여 평가
- (신진연구인력 자격 완화) 연구자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대상자 확대 및 개인연구사업과의 자격 기준 통일로 연구자 혼란 방지
- 기준 신진연구인력 기준(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 39세 이하 연구자)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 추가

- 연구 지속성 · 자율성 보장, 연구자의 책무성 준수 등을 위한 기준 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을 보장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 변경 시 허용 사유 이외는 중단 원칙 적용(허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변경)

<<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변경 허용 사유 >>

구분	세부 내용
신분변동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 공직,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상근 관리자 직책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천재지변,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인정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1항 1호에 따라 집단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 변경이 인정된 경우 ※ 변경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MRC)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생산 · 공유 ·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선정평가 전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 여부 확인 및 단계 · 최종평가 시 DMP 이행 현황을 평가에 반영(선도연구센터 중 MRC에 시범 적용)

* Data management plan의 약자, 연구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관리 계획

II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기간 및 제출 자료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2.(월) 18:00 ※ 신청마감일 : 2026. 2. 2.(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5.(목) 18:00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6.2.2.)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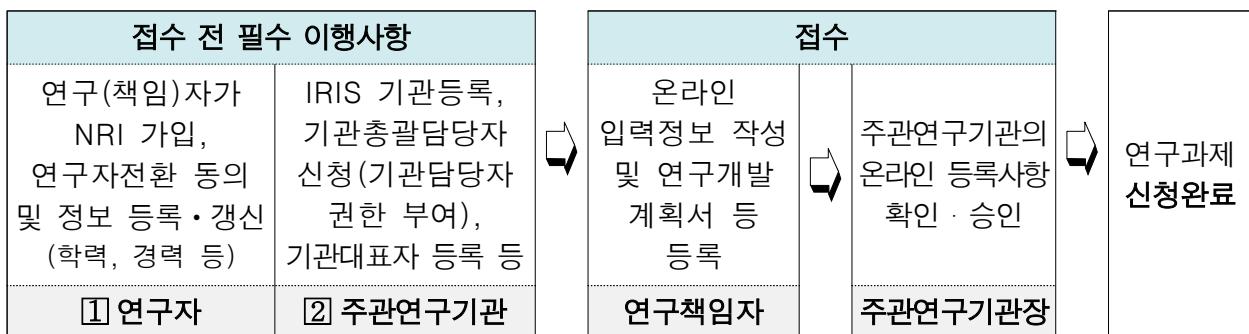
■ 제출 자료(온라인 제출)

- (1단계) 온라인 입력
 -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 연구개발비 내역, 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 파일) 업로드
 - ①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1부
 - ② 첨부 목록 1부
 - ③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1부
 - ④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⑥ (MRC) 연구책임자 및 참여(공동)연구원 소속 증빙자료 1부
 - ⑦ (MRC)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1부

2 신청 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 연구기관 확인 · 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3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SRC · ERC) 이공계 석 · 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 (MRC)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국내 대학으로 연구개시일('26.7.1.) 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만 신청 가능
 - ※ 동일대학 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캠퍼스(분교)는 각각 별도 기관으로 취급
 - ※ MRC 재진입 : 2026년 2월 종료되는 센터는 재진입으로 간주
 - 기존 센터장이 재신청하거나, 센터장 변경 시 기존 공동연구원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 * 기초의과학(의 · 치의 · 한의 · 약학)분야 대학원 정의는 FAQ p35 참고

■ 연구진 구성 및 자격

-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참여(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 ※ 본 사업의 참여(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에 해당
- 연구책임자와 참여(공동)연구원은 아래의 자격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MRC 주관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의학분야(의 · 치 · 한의학) 기초의학교실 및 약학대학에 소속된 기초의과학자*여야 함
 - * 기초의과학자(Ph.D., 약학박사, 진료의무가 없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구분	자격 요건
연구책임자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및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연구책임자 이면서 그룹책임자로 반드시 참여• 센터 포함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내 수행(2책5공)
참여(공동)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내외 공공·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p>※ 단, 대학 소속 그룹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p>
참여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학·석·박사급 연구원(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고용계약이 체결 필수) <p>※ 전임교원은 참여 불가</p>

* 해외 대학 소속 연구자 및 해외 공공·민간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도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민간연구소는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소 기준」 참조

■ 신청 및 참여 제한 ※ p.31,32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점검사항 참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신규과제 신청마감 전일(2026.2.4.)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

② 신청 과제 수 제한

- (신규 신청) 2026년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신규 신청의 경우, **연구책임자 및 참여(공동)연구원으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구 분	세부 사업	신청 과제수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국가연구소 (NRL2.0)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1개

※ '26년 집단연구 후속에 미선정된 경우, 신규 신청 가능

※ 리더연구는 동시 신청 가능하며,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집단연구>리더연구)

- (기 수행 연구자 신청불가)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 연구사업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공동)연구원의 경우, 2026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예외) 수행 중인 집단과제가 센터 신규과제 개시일로(2026.7.1.)부터 10개월 이내 (2027.4.30) 최종 종료하는 경우는 신규 신청 가능

③ 수행 과제 수 제한

- (정부R&D,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

※ (예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적용 예외(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 (선도연구센터, 2책5공)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 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

※ 리더연구 연구책임자 및 타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중복수행은 불가

※ (예외)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 종료하는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집단연구사업)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 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타 과제 기 수행 연구자의 선도연구센터 신규 신청 및 동시수행 가능 여부

타 과제 수행 연구자의 현재 참여 자격			선도연구센터 신규신청 및 동시수행 가능 여부		
		연구책임자	참여(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과기부 집단 연구 사업	국가연구소 (NRL2.0)	연구책임자	X	X	O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참여(공동)연구원	X	X	
		참여연구원	O (자격충족시 가능)	O (자격충족시 가능)	
	선도 연구센터	연구책임자	X	X	X
		참여(공동)연구원	X	X	O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참여연구원	X	O (자격충족시 가능)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	X	X	X
		참여(공동)연구원	X	X	O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참여연구원	X	O (자격충족시 가능)	
개인 기초	리더연구	연구책임자	X	O	O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교육부 집단 연구 사업	대학중점 연구소	연구책임자	X	X	X
		참여(공동)연구원	X	X	X
		핵심연구인력	O	O	O
	대학기초 연구소 (G-LAMP)	사업단장	X	X	X
		중점테마연구소	O (선정 시 GLAMP 포기)	O (선정 시 GLAMP 포기)	O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핵심연구인력	O	O	O
	글로컬랩	연구책임자	X	X	X
		공동연구책임자	X	X	X
		참여(공동)연구원	X	X	X
		참여연구원	O	O	O (전임교원의 경우, 불가)

※ '23년 선정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단장의 경우, 소관부서로 별도 문의

4 연구과제 및 공동연구진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2~3개의 그룹으로 구성 권장
※ 그룹별 연구원 수는 자율 구성 가능

■ 공동연구진 구성

- 공동연구진은 연구책임자와 참여(공동)연구원으로 구성
- (SRC · ERC) 센터 당 공동연구진은 최소 8명 이상 구성
- (MRC) 센터 당 공동연구진은 최소 8명 이상 구성
 - (70% 이하) 연구책임자와 동일단과대학 소속 기초의약학(의/치/한/약학) 분야 교수*
* 기초의과학자(Ph.D., 약학박사, 진료 의무가 없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 (30% 이상) 연구책임자와 동일대학 타 단과대 기초의약학 분야 교수(A)*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병원임상교수(B)** 또는 산업체 연구원(C)***
* (A)기초연구 의약학 RB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 (B)의사면허소지자(MD, DDS, O(K)MD)로서 임상수련 과정을 마치고 의료기관의
진료업무가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C)국내 공공 · 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대학 전임교원 겸직 시 참여 불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소속 병원 연구자 또는 해외 연구자

■ 연구과제 구성 관련 기타사항

-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박사후
연구원, 신진교수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 권장
- 위탁연구개발기관 설정은 가능하나, 해외연구개발기관은 불가

<참고> 산학협력과 기업 투자

- ① (산학협력)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기재
- ② (기업 투자)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일부 투자하는 경우, IRIS 시스템 설정 및 양식-[첨부7] 필수 제출
- 기업 투자 시, 혁신법 시행령 [별표1-2,3]을 준용하여 부담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업유형	최소 투자금	현금 투자 기준
중소기업	별도 제한 없음	기업투자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기업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기업투자금의 13%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기업투자금의 15% 이상

※ 선도연구센터의 기업 투자금은 대가가 없는 투자금으로 총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 형태로 처리됨 (세부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확인 필요)

5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및 협약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및 협약사항에 대하여 미이행 시 차년도 간접비 감액 등 후속조치 예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필수사항

① 센터전용공간 제공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센터 전용공간(최소 495㎡ 이상) 지원
-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간 집적화 권장
 - ※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실, 참여교수 연구실, 연구기기실, 세미나실 등 센터 전용공간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공간 사용료(관리비, 공과금 등) 부과 금지

② 행정전담인력 지원

-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센터 행정전담인력 지원 의무화(최소 1명 이상)

<참고> 행정전담인력 지원 기준 안내

- ▶ 행정전담인력 인건비(최소 1명)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이 기본원칙이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의하는 간접비에서 지원 불가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사항으로 지원하는 행정전담인력 조건을 충족한 후, 연구책임자 동의하에 발의분에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
- ▶ 행정전담인력은 직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로 지원 불가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교비 대응자금(직접비)을 부담하는 경우와 의무 지원 외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로 계상하여 운영 가능

③ 기타 지원

- 총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 보장
- 독립된 센터로 설치 및 운영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권장사항

① 연구인력 및 연구기기

- 신규교수 채용 시, 센터 관련 교수의 우선 충원 방침 마련(박사후 연구원, 신진교수 등 젊은 연구자 채용 권장)
- 구매 또는 공용기기 활용을 통해 연구 수행 시 필요한 연구기기 지원

② 강의시간 및 보직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 축소 및 별도 보직을 맡지 않는 것을 권장

6 기타 사항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소 기준

- 민간연구소는 연구개발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아래 기준 중 한가지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① 과기정통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②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③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관련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기초연구사업 전임, 비전임 교원의 정의

구 분	직 급(예시)	비 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Post-doc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3책5공) 및 예외 관련 주요 내용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접수 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계상을 원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IRIS 협약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계상·집행 가능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IRIS 승인성 협약변경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및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III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과 함께 장기적 집단연구 과제로서의 적합성과 분야별 목적성·전략성을 고려하여 평가

구분	선정 주안점
이학분야 (SRC)	국가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문적 파급 효과,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의 특정 목적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집단을 선정·지원
공학분야 (ERC)	학문적 성과와 함께 원천기술 개발, 응용연구 연계 등 성과 활용이 가능한 국가전략분야 씨앗기술 창출 센터를 선정·지원
기초의과학분야 (MRC)	참여(공동)연구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기초의약학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임상/산업체 연계 및 성과 활용 강화로 바이오/건강 R&D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 집단을 선정·지원

-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와 공동 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
 - 질적 평가를 강화를 위해서 연구업적 자체에 대한 질적 평가 유도※ 임팩트 팩터(IF) 등 학술지 기반의 정량적 지표 기재를 지양하고 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연구계획과의 연관성을 기술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 심층평가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수한 과제를 엄선

2 평가 절차 및 방법

- 심층평가 :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주안점을 바탕으로 위원회 토론을 통해 추천



- ※ 평가절차는 접수 과제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추후 발표평가 시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으로 발표자료를 제출/활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평가 주안점

SRC, MRC	ERC
사업 철학 및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 철학 및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연구의 창의성 및 수월성 확보 계획	연구의 원천성 및 파급 가능성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적합성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적합성
공동연구진 역량 및 집단연구 네트워킹의 구체성	공동연구진 역량 및 집단연구 네트워킹의 구체성
인력양성 계획의 적절성	인력양성 계획의 적절성
연구 성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연구 성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	연구기간 및 연구비 적정성

*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별 평가계획에서 별도 수립

4 차별성 검토

구 분	NTIS 차별성 검토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검토 내용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 시) 전문가를 활용한 차별성 검토 실시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동일 차수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최초신규 접수된 연구 계획서와 차별성 검토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검토 방법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한국연구 재단 e-R&D시스템을 통해 유사과제 검토,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검토 기준	선정/후보권 과제와 최근 10년(당해연도 포함) 이내 NTIS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선정/후보권과 관계없이 실시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								
검토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td> <td style="width: 25%;">평가 실시 → 선정/후보권 과제 확정 학문단</td> <td style="width: 25%;">(RB/전문가 2인을 통한) 차별성 검토 실시</td> <td style="width: 25%;">(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PM 협의체</td> </tr> <tr> <td>사업팀</td> <td>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사업팀</td> <td>학문단</td> <td>PM 협의체</td> </tr> </table>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평가 실시 → 선정/후보권 과제 확정 학문단	(RB/전문가 2인을 통한) 차별성 검토 실시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PM 협의체	사업팀	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사업팀	학문단	PM 협의체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평가 실시 → 선정/후보권 과제 확정 학문단	(RB/전문가 2인을 통한) 차별성 검토 실시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PM 협의체							
사업팀	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사업팀	학문단	PM 협의체							

* 차별성 검토 방법 및 세부 기준은 향후 AI 적용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라 관리(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1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비 구성 항목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간접비 계상식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text{억원} \times \text{기관별 간접비율} + (\text{직접비의 } 2\text{억원 초과분} \times \text{기관별 간접비율} \times 30\%)$$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간접비 계상대상에서 제외

※ 간접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 참조)

〈참고〉 간접비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⑥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지급방법 :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재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
 - 선도연구센터사업은 2014년부터 총괄세부 형태에서 단위과제(그룹구성) 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괄 지급함
- ※ 그룹별 연구개발비 지급 불가

〈참고〉 센터운영방식 변경(2014년부터)

센터-총괄-세부 등 계층적 운영 방식을 연구 '소그룹' 형태로 단순화 하여 구성원간 연구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연구의 유연성 강화

* 총괄/세부과제 책임자를 없애고, 주관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연구진행 및 연구개발비 집행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협약,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비 집행 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하여야 함
- 사용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및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연구개발비 사용 후 통합연구관리시스템에 집행 내역을 적시 등록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으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적발 시에는 과제 해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적용

<참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관련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 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 부당회수등"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1 연차보고서, 단계 및 최종평가 등

□ 연차보고서 제출

- 각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1개월 전, 연차보고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제출(단계보고서 제출 시에는 단계보고서로 대체)

□ 단계 및 최종평가

구분	단계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제출	일정 (각 단계별) 단계 종료 2개월 전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출										
	서류 단계보고서 온라인 제출	최종보고서 온라인 제출										
내용	연구목표 달성 수준 및 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공동연구 활성화 수준, 향후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연구수행 내용 및 과정,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 정도, 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토론평가										
절차	<table border="1"> <tr><td>① 전문가 평가</td></tr> <tr><td>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td></tr> <tr><td>연구재단</td></tr> </table>	① 전문가 평가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연구재단	<table border="1"> <tr><td>② 위원회 심의 또는 결과 확정</td></tr> <tr><td>평가 결과 확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과기정통부)</td></tr> <tr><td>과기정통부</td></tr> </table>	② 위원회 심의 또는 결과 확정	평가 결과 확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table border="1"> <tr><td>③ 통보</td></tr> <tr><td>연구자 통보</td></tr> <tr><td>연구재단</td></tr> </table>	③ 통보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① 전문가 평가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연구재단												
② 위원회 심의 또는 결과 확정												
평가 결과 확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③ 통보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결과 활용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조정 또는 계속지원 여부 결정 ※ C등급 과제의 차기단계 예산 일부(10%) 감액 또는 과제중단(CRC) 가능 ※ D등급을 받은 과제 중 '불성실' 판정 과제는 중단 및 제재처분 가능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를 공개 하여야 함										
비고	-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 제출용 최종보고서 제출										

※ 세부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현장컨설팅 실시

- 지원철학에 맞는 센터운영 유도를 위해 컨설팅 개념의 현장점검 실시
 - (전담평가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담평가단 구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컨설팅 시기) (SRC/ERC/MRC) 1단계 2년차
 - (컨설팅 항목) 협력 네트워크 유기성, 집단연구 활성화 정도, 인프라 구축 등
- ※ 현장컨설팅 항목은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변경 가능

2 성과 관리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관리

-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공동소유) 과제 참여형태, 성과창출 형태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단, 선도연구센터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 (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은 원칙적으로 성과를 소유할 수 없음
- (위탁연구)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국제공동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등을 통해 외국 소재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 등에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개인명의 연구개발성과 소유)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 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번호,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등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논문, 지식재산권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 발생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에 수시 입력

□ 연구개발성과 공개

-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여야 함
- 다만,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
-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연장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 성과목표 관리제

- 선정 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초 연구개시 후 1년(12개월) 이내 참여(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주요 연구내용 변경 시 차년도 연구개발비 조정

구분	기본원칙	적용기간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20% 삭감	연구과제 개시 후 12개월 이내
연구주제 변경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30% 삭감	

※ 단, 참여(공동)연구원은 변경 허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이며, 기존 참여(공동)연구원의 참여 중단 없이 신규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허용 사유 〉

구분		세부내용
신분변동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 공직,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상근 관리자 직책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천재지변,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연구 수행 포기 사유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 요청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 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퇴직 재임용 탈락 및 소속기관의 규책사유(폐교, 파산 등)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 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기준 이외의 사유로 연구 수행 포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일절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 수행 외 국가R&D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 불가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
 - ※ 연구개시일에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 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4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 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 시, 특수관계자의 학위 및 전공·연구 실적 및 연구 참여 경력·연구 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승인 이후 각 항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요청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검증자료 및 결과 등을 기초하여 전문가 검토실시
 - ※ 주관연구기관의 실질적 검토 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 제출 의무화
 -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 계속과제 동일 적용

5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이수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 이수기간 : 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과정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 교육관련 문의전화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교육운영 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운영 콜센터 : 1588-5834, e-kird@kird.re.kr

6 (MRC만 해당)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

-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함
- R&D 전 과정을 통해 관리하며, 단계·최종 평가시 평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한 DMP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공유 현황*을 제공
 - * 연구자가 제출한 데이터 등록·공유 현황 자료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생명연구 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KOBIC)이 발급한 데이터 등록증 등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 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8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 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9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10 연구자 연구윤리 의식 강화 및 확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물론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주요 연구수행 실적 작성 시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를 누락한 경우 또는 2개 이상 동시 신청한 과제가 동시에 선정되었음에도 과제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11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2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1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4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다운로드/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042-240-6471)로 문의

15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불임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아래 신청자격의 적정성 관련 각 항목을 반드시 확인 후 확인 여부를 표기(V)하여 별도 제출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사전(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구 분	확인 내용	확인 여부
① 주관연구 개발기관 자격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SRC·ERC)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MRC)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내 대학으로 연구개시일 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만 신청 가능 Check (신청요강) p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②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①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 기준 으로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 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Check (신청요강) p7. 연구진 구성 및 자격 (연구개발계획서) [센터 구성 및 인력 현황]	
	② 연구책임자는 본 선도연구센터 내 그룹 중 하나의 그룹책임자이어야 함 (연구책임자이면서 그룹책임자로 반드시 참여)	
	Check (신청요강) p7. 연구진 구성 및 자격 (연구개발계획서) [센터 구성 및 인력 현황]	
	③ 연구책임자는 본 선도연구센터 수행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 선도연구센터 수행기간 중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 [양식 A802] 정년 이 후 대책을 기재하여야 함 Check (신청요강) p7. 연구진 구성 및 자격 p11.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및 협약사항 (첨부목록) [첨부5.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확약서] [주관연구책임자 정년 이후 대책]	
④ 참여(공동)연구원 자격여부	④ 연구책임자는 선도연구센터 이외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에 연구책임자로 1과제 이내로만 수행하여야 함 (2책5공)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6.7.1.)을 기준 으로 10개월 이내(2027.4.30.)에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인정 Check (신청요강) p7. 연구진 구성 및 자격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① (참여(공동)연구원) 참여(공동)연구원은 국내외 대학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내외 공공·민간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이어야 함 Check (신청요강) p7. 연구진 구성 및 자격 (연구개발계획서) [센터 구성 및 인력 현황]	
③ 신청 및 참여 제한	② (그룹책임자) 그룹책임자는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또는 국내외 공공·민간 연구소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이어야 함 Check (신청요강) p7. 연구진 구성 및 자격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④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 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한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Check (신청요강) p8. 신청 및 참여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구 분	확인 내용	확인 여부
④ 신청 및 참여 제한	참여제한 여부 ②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본 선도 연구센터 신청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신청마감 전일(2026.2.1.)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 가능 Check (신청요강) p8. 신청 및 참여제한	
	집단연구 종복신청 여부 ③ 2026년도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또는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신규과제에 신청한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는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단, '26년 집단연구 후속신규에 미선정된 경우, 신청 가능) Check (신청요강) p8. 신청 및 참여제한	
	집단연구 1인1과제 수행여부 ④ 현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는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참여 할 수 없음 ※ 참여 중인 집단연구사업이 연구개시일(2026.7.1.) 기준 10개월 이내 (2027.4.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Check (신청요강) p8. 신청 및 참여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리더연구 연구책임자 수행여부 ⑤ (연구책임자) 현재 리더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 현재 참여 중인 리더연구사업이 선도연구센터 연구개시일(2026.7.1.) 기준 10개월 이내(2027.4.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Check (신청요강) p8. 신청 및 참여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⑥ 공동연구진 구성요건 총족여부 공동연구진(연구책임자+참여(공동)연구원) 구성은 신청마감일 기준 으로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부구성 요건은 신청요강 참고 (SRC-ERC) 센터 당 공동연구진은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 (MRC) 센터 당 공동연구진은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 - (70% 이하) 연구책임자와 동일단과대학 소속 기초의약학(의/치의/한의/약학) 분야 교수 - (30% 이상) 연구책임자와 동일대학 타 단과대 기초의약학 분야 교수(A)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병원임상교수(B) 또는 산업체 연구원(C) Check (신청요강) p10. 공동연구진 구성 (연구개발계획서) [센터 구성 및 인력 현황]	
⑦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 확약사항	① (확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Check (첨부목록) [첨부4.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확약서]	
	② (센터 전용공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센터 전용공간(495m ²)을 지원하여야 함 Check (신청요강) p11. 센터전용공간 제공 (첨부목록) [첨부4.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확약서]	
	③ (행정전담인력)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행정전담인력(최소 1명)을 지원하여야 함 Check (신청요강) p11. 행정전담인력 지원 (첨부목록) [첨부4.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확약서]	
	(기업, 지자체,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확약서) (해당 시) 기업, 지자체,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원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Check (첨부목록) [첨부4-1. 교비대응자금 확약서], [첨부5. 지방자치단체 참여 의사 확인서], [첨부6.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⑧ 기타 요건	(MRC) 공동연구진(연구책임자, 참여(공동)연구원) 소속 증빙자료 및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Check [연구책임자 및 참여(공동)연구원 소속 증빙자료],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FAQ 목 차

[신청 및 수행 제한 관련] 33

- ① 현재 타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2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연구센터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 ② 현재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도연구센터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 ③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 ④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3책5공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⑤ 선도연구센터의 그룹책임자도 3책 5공의 연구책임자로 포함되나요?

[신청요건 관련] 35

- ① 기초연구사업의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②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은 꼭 국내대학이어야 하나요?
- ③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 후 참여(공동)연구원이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④ 연구책임자(센터장) 및 참여(공동)연구원의 필수 참여율이 있나요?
- ⑤ MRC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에서 기초의과학분야 대학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류 관련] 36

- ① 연구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②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 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 해야 하나요?
- ③ 발표평가 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발표해도 되나요?
- ④ 국제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 의무는 폐지가 된 것인가요?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 37

- ①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② 선도연구센터사업의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③ 연구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④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참고〉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 3책 5공 등 점검사항

연구책임자로 신청하십니까?

↓ YES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가 선정된다면
연구개시일('26.7.1) 기준,
선도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가
3개를 초과합니까?

↓ NO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가 선정된다면
연구개시일('26.7.1) 기준,
선도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전체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가
5개를 초과합니까?

↓ NO

선도연구센터 외 타 집단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하셨습니까?

* 과기부 : 기초연구실

교육부 : 대학중점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 YES

초과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됩니까?

→ YES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3책
5공에 해당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YES

→ YES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NO

기초연구사업 집단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
원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까?

* 과기부 :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교육부 : 대학중점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 NO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YES

현재 연구책임자/참여(공동)연구원으로 수행 중인 집단연구사업
과제가 '27.4.30 이내 최종 종료됩니까? (연차/단계종료 제외)

→ NO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YES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가
선정된다면 연구개시일('26.7.1)
기준, 선도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가 2개를
초과합니까?

→ YES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26.7.1.)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됩니까?

→ NO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 2책 제한을
위반하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NO

↓ YES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선도연구센터 참여(공동)연구원 3책 5공 등 점검사항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하십니까?

↓ YES

선도연구센터 신규
과제가 선정된다면
연구개시일('25.6.1)
기준, 선도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전체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가 5개를 초과합니까?

→ YES

초과한 과제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
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됩니까?

→ N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3책 5공에 해당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NO

↓ YES

선도연구센터 외 타 집단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
(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하셨습니까?

* 과기부 : 기초연구실
교육부 : 대학중점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 YES

신규과제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NO

기초연구사업 집단연구사업*을 현재 수행
하고 있습니까?

* 과기부 :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교육부 : 대학중점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 NO

신규과제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YES

연구책임자/참여(공동)연구원으로 수행 중인
집단연구사업 과제가 '27.4.30 이내 최종종료됩니까?
(연차/단계종료 제외)

↓ YES

신규과제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수행 제한 관련

⑥ 현재 타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2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연구센터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도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는 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 단,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책5공)

- 위의 제한사항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동, 참여연구원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⑥ 현재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도연구센터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과제(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집단연구사업이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2023년도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인 연구원의 경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 전 전문기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교육부)대학기초연구소,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에 참여중인 연구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는 2026년도 선도연구센터에 신청할 수 없으며,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2026년도 신규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없음
 - 단, 참여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되는 경우 참여 가능

⑥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1과제,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1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3책5공 이내일 경우(연구책임자의 경우, 2책5공)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중복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면 선도 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수행 중인 리더연구 과제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2026.7.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7.4.30.)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 된다면 신청 가능)

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3책5공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것과 별개로 3책5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구 사업 집단연구사업의 예외 기준(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 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 기준(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1인 1과제」는 “기초연구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예외 기준은 다르며 각각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선도연구센터의 그룹책임자도 3책 5공의 연구책임자로 포함되나요?

Ⓐ 선도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센터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되며, 그룹책임자를 포함한 그 외 연구원(참여(공동)연구원 포함)은 참여연구원에 해당됩니다.

□ 신청요건 관련

Q 기초연구사업의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매년 실시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② 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약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 ※ 소속 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한다.

■ 국·공립대 기금교수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의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원

- 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원
- ②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① 국·공립대 : 「HK교수 운영규정」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 ② 사립대 :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① 국·공립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
- ②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 ④ 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②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은 꼭 국내대학이어야 하나요?
- Ⓐ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이 꼭 국내대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대학 소속일 경우에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연구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는 국내 대학 소속이어야 합니다.
- ③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 후 참여(공동)연구원이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 최초연구 개시 후 1년(12개월) 이내에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시에는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20% 삭감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목표 관리제
- 선정 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초 연구개시 후 1년(12개월) 이내 참여(공동)연구원, 연구 주제 등 주요 연구내용 변경 시 차년도 연구개발비 조정

구분	기본원칙	적용기간
참여(공동)연구원 변경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20% 삭감	연구과제 개시 후 12개월 이내
연구주제 변경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30% 삭감	

- ④ 연구책임자(센터장) 및 참여(공동)연구원의 필수 참여율이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으로, 종전 “참여율” 정의가 삭제되어, 기초연구사업에서 운영해 온 “최소참여율” 적용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공동)연구원이 준수하여야 할 필수 참여율은 없습니다.
- ⑤ MRC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에서 기초의과학분야 대학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내 대학이란 인체의 질병예방 진단 치료의 원리를 밝히기 위한 의학적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분야 대학원을 의미합니다. 인체와 무관한 동물, 식물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대학원은 기초의과학분야 대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⑥ 대학 소속 교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선도연구센터에 지원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다만,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공동)연구원으로 지원 할 경우, 대학 소속 전임·비전임 교원이어야 하므로 연구원 정보 입력 시 대학 소속 교원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관련

① 연구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② 계획서 분량은 35페이지(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5. 연구 수행 역량)입니다. 제시된 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글자 크기나 폰트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으며, 계획서 양식 내 표 서식은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③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④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⑤ 발표평가 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발표해도 되나요?

⑥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연구내용으로 발표자료를 제출/활용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국제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 의무는 폐지가 된 것인가요?

⑧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사업의 글로벌 유형을 폐지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및 글로벌 협력 연구를 수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

①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② A 연구지원인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 수당 계상·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연구 과제에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③ 선도연구센터사업의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④ A 사업규모에 따라 '2억원 초과분 계상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간접비 계상식

$$= 2억원 \times \text{기관별 간접비율} + (\text{직접비의 } 2억원 \times \text{기관별 간접비율} \times 30\%)$$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간접비 계상대상에서 제외

○ 또한, 과기정통부 소관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빌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⑥ A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 대학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⑦ 연구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⑧ A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주요 유의사항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의 인건비를 기재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위과정생만 기재(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p>※ 휴학생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p> <p>※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p>
연구시설 · 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원래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시설·통합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변경(증액 및 감액 모두 포함) 불가

항목	주요 유의사항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등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 불가하며, 연구수행 목적 등으로 인한 파견 관련 비용에 한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계상 불가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실제 인건비 사용 금액이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연구수당 또한 실 사용 금액의 20%까지만 지급 가능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해외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불승인되어 계약위반이 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함) 과제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자(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불가(부처 유권해석)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조

붙임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시행)에 따라 협약 및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세부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 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 · 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구시설 · 장비 구입 · 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시설 · 장비의 구입 · 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2) 연구시설 · 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비

	<p>3)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유지비: 유지 ·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p> <p>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 · 시설의 매입 · 임차 · 조성비, 설계 · 건축 · 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 · 설비비</p>
라. 연구재료비	<p>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p> <p>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p> <p>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p>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 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 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부담비	<p>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p> <p>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p>
아. 연구활동비	<p>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 · 특허 · 표준 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p> <p>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p> <p>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 세미나 개최 비용</p> <p>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p> <p>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 네트워크의 이용료</p> <p>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 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p> <p>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 훈련 비용, 학회 ·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p> <p>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 · 기관 · 단체에 소속</p>

	<p>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p> <p>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p> <p>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p> <p>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p>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p>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p> <p>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p> <p>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p> <p>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p> <p>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p> <p>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p> <p>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p> <p>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p> <p>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p>

	<p>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p> <p>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p> <p>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p> <p>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p>
나. 연구지원비	<p>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p> <p>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p> <p>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p> <p>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p> <p>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p> <p>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p> <p>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p> <p>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p> <p>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p> <p>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p> <p>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차 관련 비용</p> <p>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p> <p>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p> <p>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p> <p>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p>
다. 성과활용 지원비	<p>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p> <p>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p> <p>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p> <p>다) 홍보전문가 양성</p>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p>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출원 · 등록 ·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p> <p>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p> <p>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p> <p>라) 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 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 · 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p>
3)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학석사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
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
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학문단별 RB 분야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자연과학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해석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확률/이론통계
		응용통계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통계물리/생물물리/복합물리
		광학/원자분자물리
	지구과학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지구/지질과학
	화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무기화학
	생명과학	유기화학
		생화학/화학생물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세포생물학
	기초생명	유전학
		생명정보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암생물학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생식발달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외과/응급증환자 및 주술기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안과학
의약학	기초의학	
	기반생명	
	분자생명	
	응용의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공학	의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건강증진의학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리/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기계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재료가공
	건설/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설비환경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소재	소재	토목구조/시공/재료
		건축시공/재료
		건축구조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화공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소재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전기/전자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기반 융합
ICT·융합연구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u>소프트웨어</u> 인공지능(기반 및 학습/추론) 인공지능(지각/인식) 인공지능(응용)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의료기기 바이오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바이오소재 뇌인지과학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차세대에너지 융합 환경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교차및초학제융합 생활과학

● 이학연구센터 : SRC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90	수학 물리학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생물과학	위상수학및기하학연구센터 이론물리학연구센터 반도체물성연구센터 유기반응연구센터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경상대학교	'99년 종료
'91	수학 물리학 화학 화학 생물과학 지구과학 농수산 기초의약학	대역해석학연구센터 유전체물성연구센터 생리분자과학연구센터 분자과학연구센터 세포분화연구센터 전략광물자원연구센터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 암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00년 종료
'95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초미세표면과학연구센터 분자촉매연구센터 호르몬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04년 종료
'98	화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전자광감응분자연구센터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 뇌질환연구센터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07년 종료
'99	물리학 물리학 수학 기초의약학 농수산 화학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전산수학연구센터 면역제어연구센터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 분자설계 및 합성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울산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08년 종료
'00	수학 물리학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 기초의약학 생물과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복잡계통계연구센터 고에너지물리연구센터 스핀물성연구센터 기후환경시스템연구센터 기능성분자집합체연구센터 단백질네트워크연구센터 식물대사연구센터 암전이연구센터 NO라디칼성연구센터 분자치료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09년 종료
'01	물리학 기초의약학 생물과학	나노튜브 및 나노복합구조연구센터 혈관연구센터 농업식물스트레스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10년 종료
'02	물리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물리학	양자광기능물성연구센터 류마티스연구센터 노화 및 세포사멸연구센터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	한양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11년 종료
'03	화학 생물과학	생활성분자하이브리드연구센터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12년 종료
'05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양자시공간연구센터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 세포기능제어연구센터 여성질환연구센터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14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07	수학 화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대수구조 및 응용연구센터 시공간 분자동력학 연구센터 세포다이나믹스 연구센터 생체방어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16년 종료
'08	물리학 물리학 화학 농수산 농수산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양자메타물질 연구센터 파장한계 광학연구센터 분자-소재 융합계의 전자-광 거동 연구센터 곰팡이 병원성 연구 센터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 골대사 연구센터 신경퇴화제어 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15년 종료
'09	수리과학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	편미분방정식 및 함수해석학 연구센터 인터페이스 분자제어 연구센터 미토콘드리아 허브제어 연구센터 한국중성미자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16년 종료
'10	수리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융합과학	은하진화연구센터 세포간신호교신에의한 암제어연구센터 생체막가소성연구센터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광운대학교	'17년 종료
'11	자연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전자정보융합과학	토풀로지 물질 연구센터 기하학 연구센터 후성유전 조절에 의한 세포기능 연구센터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데이터 과학과 지식 창출 연구센터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18년 종료
'12	생명과학	세포항상성 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19년 종료
'14	자연과학	차세대유기합성연구센터	한양대학교	'21년 종료
'15	물리학 농수산	[후속] 양자메타물질 연구센터 [후속]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18년 종료 '18년 종료
	물리학 수학 기초/기반 분자 약학	극미세 초고속 X-선 과학 연구센터 응용해석 및 계산 센터 인간화 돼지 연구센터 터널링 나노튜브 연구센터 메타리셉톰 제어 연구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22년 종료
'16	물리학	[후속] 한국중성미자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19년 종료
	기초생명 분자생명 기초생명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세포 로지스틱스 연구센터 이질성기반 세포적응 연구센터 당 수식화 네트워크 연구센터 다공성 플랫폼 기반 생체모방 촉매 응집상 양자 결맞음 연구센터 고에너지 천체물리 연구 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22년 종료
	수학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23년 종료
'17	분자생명 화학 기초/기반생명 물리학	비임파스 장기 면역 연구센터 흔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세포소기관네트워크연구센터 반데르발스 물질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24년 종료
	지구과학	[후속] 은하진화연구센터	연세대학교	'20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18	기반생명 분자생명 지구과학 분자생명 화학 물리학 기초생명	식물면역연구센터 세포 정체성 연구 센터 비가역적 기후변화 연구 센터 미생물 생존 시스템 연구센터 멀티스케일 카이랄 구조체 연구센터 극한핵물질연구센터 대사스트레스 세포대응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25년 종료
	물리학	[후속] 토플로지 물질 연구센터	포항공과대학교	
'19	수학	확률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분자생명	[후속] 세포 항상성 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22년 종료
'20	수학 물리학 화학 분자생명 분자생명	모듈과 공간의 양자구조 연구센터 베리곡률 기반 신물성 연구센터 양자동역학 연구센터 세포 분해 생물학 연구단 시스템스 노화기전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화학	[후속] 차세대유기합성연구센터	한양대학교	'24년 종료
'21	물리학 화학 기초생명 기반생명	신개념 에피성장 양자신소재 연구센터 전자전달 연구센터 식물 가소성 연구센터 비교의학 질환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약학	메타리셉트 제어 연구센터	중앙대학교	'25년 종료
'22	수학 물리학 기초생명 분자생명 지구과학	비선형 동역학 수리응용 센터 중성미자 정밀 연구센터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 스토카스틱 줄기성 연구센터 지구심부-지표 상호작용 연구센터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학 분자생명	응집상 양자 결맞음 연구센터 이질성기반 세포적응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숙명여자대학교	후속지원
'23	수학 물리학 화학 기초생명 분자생명 기반생명	수리 기계학습 연구센터 극한 양자기능물질 연구센터 비대칭 촉매반응 디자인센터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메카노지노믹스 연구 센터 숙주표적 항바이러스 연구센터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화학	흔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후속지원
'24	화학 물리학 기초생명 기초생명	시스템 화학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양자 각운동량 동역학 센터 뇌혈관장벽 연구센터 글로벌 식물스트레스 연구센터	중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건국대학교	
	기반생명	글로벌 식물면역연구센터	서울대학교	후속지원
'25	지구과학 화학 분자생명	해양물질순환프로세스 글로벌 연구센터 전기화학 분자변환 연구센터 글로벌 조직감각면역 연구센터	한양대학교에리카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 공학연구센터 : ERC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90	재료공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공학 화학공학 농 수 산	신소재박막가공 및 결정성장연구센터 인공지능연구센터 센서기술연구센터 인공위성연구센터 첨단유체공학연구센터 생물공정연구센터 동물자원연구센터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건국대학교	'99년 종료
'91	재료공학 재료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농 수 산 기초의약학	재료계면공학연구센터 급속응고신소재공학연구센터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 터보·동력기계연구센터 신형원자로연구센터 촉매기술연구센터 공정산업지능자동화연구센터 해양산업개발연구센터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00년 종료
'94	생물과학 재료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토목건축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 항공재료연구센터 광전자연구센터 정밀정형 및 금형가공연구센터 초대형구조시스템연구센터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03년 종료
'97	재료공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세라믹공정연구센터 미세정보시스템연구센터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 산업설비안전성평가연구센터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 기능성고분자신소재연구센터 지진공학연구센터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06년 종료
'99	전기전자 컴 퓨 터 기계공학 전기전자 화학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 최적설계신기술연구센터 인간친화복지로봇시스템연구센터 고차구조형유기산업재료연구센터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 환경모니터링신기술연구센터	동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08년 종료
'00	기초의약학 복합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복합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단백질소재연구센터 지능형생체계 면공학연구센터 광인터넷연구센터 가상현실연구센터 초미세생체전자시스템연구센터 연소기술연구센터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센터 전자패키지재료연구센터 플라즈마응용표면기술연구센터 유변공정연구센터 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 첨단도로연구센터	조선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09년 종료
'01	화학공학 복합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초미세화학공정시스템연구센터 생체계측신기술연구센터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마이크로열시스템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10년 종료
'02	농수산 토목건축 화학공학 복 합 학 기계공학 전기전자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 스마트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 임피던스영상신기술연구센터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생체인식연구센터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11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03	전기전자 화학공학	집적형광자기술연구센터 차세대바이오환경기술연구센터	인하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12년 종료
'05	화학공학 전기전자 재료공학 토목건축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 지능형RF연구센터 자기조립소재공정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서울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국민대학교 한양대학교	'14년 종료
'07	화학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초의약학	패턴집적형능동풀리머소재센터 차세대플렉시블디스플레이융합센터 인간중심제품혁신연구센터 대사및염증질환신약개발연구센터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16년 종료
'08	재료공학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복합학 복합학	고효율무기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 기능성소자융합플랫폼연구센터 소프트웨어무결점연구센터 핵융합로공학선행연구센터 차세대염료감응태양전지연구센터 지속가능건강건축기술연구센터 종양의료개인특화를위한기기시스템연구센터 통합형 휴먼센싱 시스템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15년 종료
'09	의약학 전자정보 공학기반 융합과학 융합과학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 다중현상 CFD연구센터 테라헤르츠파기반 생체응용시스템연구센터 기후/환경 변화예측 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16년 종료
'10	화학화공 공학기반 전자정보	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연구센터 TOD기반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풍력에너지 전력망적응기술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17년 종료
'11	건설/교통 기계 소재 전기전자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국부투사영상과 햅틱기반 수술용 로봇기술 연구센터 메카트로닉스 융합 부품 소재 연구센터 홀로-디지로그 휴먼미디어 연구센터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창원대학교 광운대학교	'18년 종료
'12	기계	설계기반 미래성형 기술개발	부산대학교	'19년 종료
'13	기계	차세대 우주추진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20년 종료
'14	통신 화공	무선 에너지 하이스팅 통신 융합 연구센터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 센터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21년 종료
'15	바이오의료융합	[후속] 통합형 휴먼센싱 시스템 연구센터	한양대학교	'18년 종료
	융합연구	최소침습 정밀표적치료 연구센터	경희대학교	'17년 종료
	소재 전기/전자	전략 구조소재 신공정 설계 연구센터 유연 열전 반도체 소자기술 센터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0년 종료
	기계 건설/교통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 건설구조물 내구성 혁신 연구센터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22년 종료
'16	기초의학	[후속]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연세대학교	'19년 종료
	바이오의료융합 화공 에너지환경융합 정보기술융합 기계	나노-생체유체 검사 연구단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자율운전 소형모듈형 원자로 연구센터 하이브리드 디바이스를 이용한 일주기 ICT 연구센터 인간중심 소프트로봇기술 연구센터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22년 종료
	소재	웨어러블 플랫폼소재 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원	'21년 종료
	화공건설/교통 전기/전자 기계 통신	스마트 수중 터널 시스템 연구센터 인체부착형 빛 치료 헬스케어 공학 센터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능형 바이오메디컬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상대학교 충실대학교	'24년 종료
	화공	[후속] 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20년 종료
'17	산업수학 정보기술융합	빅데이터 기반 금융·수산·제조 혁신 산업수학센터 수학기반 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22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18	컴퓨터·소프트웨어	MARS 인공지능 통합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24년 종료
	건설/교통 화공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소재 컴퓨터·소프트웨어	지능형 건설자동화 연구센터 코팅기반 화학공정 연구센터 자성기반 라이프케어 연구센터 태양광 에너지 지속가능 활용 연구센터 인공지능 활용 이오닉스 기반 소재개발 플랫폼 연구센터 암흑데이터 극한활용 연구센터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년 종료
	소재	[후속] 메카트로닉스 융합 부품 소재 연구센터	창원대학교	'21년 종료
	전기/전자 기계	확장형 양자컴퓨터 기술융합 플랫폼 센터 [후속] 설계기반 미래성형 기술개발	포항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22년 종료
'20	기계 화공 소재 컴퓨터·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융합	플러스에너지빌딩 혁신기술 연구센터 미세플라스틱 대응 화공/바이오 융합 공정 연구센터 에어로겔소재연구센터 R2R 인쇄 유연컴퓨터개발 연구센터 나노-광 융합 바이오의료 진단 연구센터	고려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소재	[후속] 전략 구조소재 신공정 설계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23년 종료
	건설/교통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소프트웨어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화공	초융합 건설 포렌식 연구센터 다분야 통합 도심항공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센터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 소프트웨어재난 연구센터 도시형 생활폐기물 가스화 물질 혁신적 전환 선도연구센터 탄소제로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링 연구센터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21	화공	[후속] 결정기능화공정기술센터	경희대학교	'24년 종료
	소재 컴퓨터·소프트웨어	웨어러블 플랫폼소재 기술센터 수학기반 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후속지원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탄소중립형 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선도연구센터	한양대학교	'24년 종료
'22	화공소재 화공 통신 바이오·의료융합	헤데로제닉 금속적층제조 소재부품 연구센터 분산형 저탄소 수소생산 연구센터 인지증강 메타통신 연구센터 스마트 혈류역학 지표 기반 실시간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기계 바이오·의료융합	인간중심 소프트로봇기술 연구센터 나노-생체유체 검사 연구단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25년 종료
	건설/교통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소프트웨어 다학제 융합·복합 바이오·의료융합	순환경재 기반 탄소중립 건축센터 다상소재 혁신 생산공정 연구센터 복원력을 가진 자율 운영 전력망 센터 초거대 AI 모델 및 플랫폼 최적화 센터 인간 중심 -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연구센터 항암 면역세포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센터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24	기계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경상국립대학교	후속지원
	화공 소재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전기/전자	e-Chem 메디트로닉 시스템 글로벌 연구 센터 글로벌 생체융합 인터페이싱 소재 센터 워터 리파이너리 플랫폼 자동화/모듈화 선도연구센터 플러그앤플레이 (P&P) 칩셋 인티그레이션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태양광 에너지 지속가능 활용 연구센터	부산대학교	후속지원
'25	건설/교통 바이오·의료융합 기계	인공지능 플러스 K건설인프라 레질리언스 연구센터 생체-얼음 계면제어 바이오보존 증강센터 로봇 기능성 스킨 및 초감각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 기초의과학연구센터 : MRC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02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세포사멸질환 연구센터 활성산소에 대한 생체반응 연구센터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 암분자치료 연구센터 종양 면역 의과학 연구센터 만성대사성질환 연구센터 전정과우기관 연구센터 유전자 제어 의과학 연구센터 알레르기성 면역질환연구센터 동통과 신경손상 연구센터 신경 세포 흥분성 조절 연구 센터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11년 종료
'03	응용의학 기초의학 치의학 기초의학	유전체 및 단백체 환경독성 연구센터 만성 염증질환 연구센터 구강악안면 경조직 재생 연구센터 내성세포 연구센터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12년 종료
'05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신경기능장애 연구센터 허혈조직재생 연구센터 노인성혈관질환 연구센터 감염성질환제어 연구센터 심혈관계질환 천연물개발연구센터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한림대학교 동국대학교	'14년 종료
'07	한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암예방소재개발연구센터 맞춤치료를 위한 생체지표 연구센터 감염신호네트워크응용연구센터 신호전달장애 연구센터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16년 종료
'08	치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한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두개안면 기능장애 연구센터 구강악안면 노인성 기능장애 연구센터 세포기능장애 연구센터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당뇨질환 연구센터 노인구강질환제어 연구센터 혁신 암치료제 연구센터 줄기세포 행동제어 연구센터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17년 종료
'09	약학 약학	내인성리간드 신호전달조절 항암제 연구센터 분자염증 노화제어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18년 종료
'10	약학 기초의학	에피지놈 제어 연구센터 조직손상 방어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19년 종료
'11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한의학 치의학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신경면역 정보저장 네트워크 연구센터 유전자 제어 의과학 연구센터 대사조절 유전체 통합연구센터 활성산소 기초의과학 연구센터 세포운영조절 연구센터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 Biomineralization 장애 연구 센터	원광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전남대학교	'18년 종료
'12	치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센터 암진화 연구센터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	경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19년 종료
'14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의학 한의학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 비만 매개 질환 연구센터 종양 이형성 및 네트워크 제어 연구센터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인하대학교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21년 종료
'15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 혈관성 질환 유전자세포치료 연구센터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연구센터 바이오향노화 의과학연구센터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대학교	'22년 종료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16	치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미각연구센터 톨유사수용체 기반 질병 연구 센터 말초신경병증 연구센터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아대학교	'22년 종료
	기초의학	단일세포 네트워크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23년 종료
'17	약학 기초의학 치의학 기초의학 한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종양 이환 네트워크 연구센터 대사염증 연구센터 얼굴 신경-뼈 네트워크 연구센터 세포내외 노화 및 병적환경개선에 의한 조직재생 촉진 연구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감염 제어 컨버전스 연구센터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자기방어 연구센터 뉴로바이오타 연구센터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한양대학교 원광대학교 충남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경희대학교	'24년 종료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약학 약학 치의학 치의학 한의학	줄기세포 면역제어 연구센터 결핵 정밀맞춤치료 선도연구센터 복합암면역치료 연구센터 만성난치질환 시스템의학 연구센터 기억 네트워크 연구센터 암 관해 표적제어 혁신의약품 연구센터 생체지질 인터액토믹스 연구센터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치주질환신호 네트워크 연구센터 치아-치주 복합체 연구센터 간질환 한약 융복합활용 연구센터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25년 종료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치의학	뇌질환 융합연구센터 빅데이터 기반 암진화 연구센터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제어 연구센터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 센터	아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한의학 기초의학 약학 기초의학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 센터 중증 폐질환 연구센터 혈관-장기 상호작용 제어 연구센터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경희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치의학	종양 가소성 연구센터 세포교신 제어 연구센터 선천면역 매개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 메카노바이올로지 치의학 연구센터	경북대학교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한의학	악성암 제어 연구센터 세노테라피 기반 대사질환 제어 연구센터 암세포 다양성 분자제어 연구센터 근육피지움 연구센터 비위(脾胃)조절기반 Gut-Brain 시스템 제어 한의과학 연구센터	조선대학교 영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치의학 약학	대사이상 간질환 연구센터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분자제어 연구센터 마이오카인 융합 연구센터 구강연조직 질환극복 융복합 연구센터 약물대사마이크로바이오믹스 연구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24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치의학	환자맞춤형 면역항암치료 연구센터 시스템 네트워크 염증 조절 연구센터 세포소기관의학 연구센터 미각-구강기능 융합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연세대학교	
'25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 통합 질병 연구센터 심혈관대사질환센터 심혈관 리모델링 질환 혁신 제어 의과학연구센터 폐섬유증 바이오의약품 융합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 융합연구센터 : CRC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03	NCRC	환경생명과학연구센터 나노응용시스템연구센터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	'10년 종료
'04		나노메디컬연구센터 시스템바이오 다이나믹스 연구센터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11년 종료
'06		세포신호전달계 바이오의약 연구센터 하이브리드 소재솔루션 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13년 종료
'08		극한광응용기술 연구센터	광주과학기술원	'15년 종료
'09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융합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16년 종료
'10		개인용 플러그 앤 플레이 전기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17년 종료
'11	GCRC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핵심 연구센터 종양미세환경 연구센터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21년 종료
'15	CRC*	사이언스 월든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	울산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22년 종료
'18	CRC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인류세 연구센터 생존 신호정보 연구센터 초연결사회 위험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사회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사회 시뮬레이션 시스템	동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25년 종료
'22	CRC	[후속] 모듈형스마트패션플랫폼연구센터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소상공인 경제생태계 연구센터 인공지능 신뢰성 라이프사이클 기반 시니어헬스 융합연구센터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24년 종료 '25년 종료
'23	CRC**	소아-노인 보행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향한 자율보행로봇 ('Miracle')개발 센터 인문의료인 양성과 전인적 환자 돌봄을 위한 의료·인문 케어 센터 사회 이의 실현을 위한 환경블라인드스팟 전략 선도연구센터 보건사회환경시스템 융복합연구센터 인공지능 예술 연구 센터 디지털인문기반 치유농업 융합연구센터 감성 지능형 아동케어 융합연구센터 메타버스 기반 방사선 안전 ICT 연구센터	연세대학교(미래) 강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성균관대학교	'25년 종료

* 10개 과제 선정 후(2015년),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 2개 과제 선정(2017년)

** 8개 과제 선정 후(2023년),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 3개 과제 선정(2025년)

● 지역혁신연구센터 : RLRC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19	경남 - 공학 경북 - 공학 전북 - 공학 충남 - 생명과학	극한환경 스마트 기계 부품 설계/제조 혁신 센터 자율형 자동차 부품소재 청색기술 선도연구센터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대사질환 조직 항상성 연구센터	창원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순천향대학교	
'20	부산 - 공학 강원 - 생명과학 광주 - 공학 대전 - 생명과학	친환경스마트선박부품기술혁신센터 바이오 신약 혁신소재 융합 선도연구센터 심혈관 환자맞춤형 차세대 정밀의료기술 선도연구센터 マイクロバイオム - 뇌신경질환 융합연구센터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21	경남 - 생명과학 경북 - 공학 전북 - 의약학 세종 - 생명과학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연구센터 탄소중립 지능형 에너지시스템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근감소증 3단계 토탈솔루션 선도연구센터 생체시계 기반 항노화 융합연구 센터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상주) 원광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22	부산 - ICT·융합 강원 - ICT·융합 전남 - 의약학 충북 - ICT·융합	스마트짐 기반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중개연구 센터 뇌혈관질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플랫폼 바이오 메디슨 첨단제형 연구센터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융합 연구센터	부경대학교 한림대학교 목포대학교 충북대학교	
'23	울산 - 공학 경북 - ICT·융합 전남 - 공학 광주 - 의약학 충북 - 공학 충남 - 공학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 연구센터 라이프프로그용 멀티모달 언택트센싱 선도연구센터 골다공증 토탈 솔루션 선도연구센터 신장질환 제어 및 투석기기 고도화 선도연구센터 기업수요 대응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선도연구센터 쉐프(SEHPC) : 지속가능한 수소 생산-변환 에너지 생태계	울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24	제주 - 공학 충북 - ICT·융합	그린수소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미래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제주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5	광주 - 공학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소자 자원재순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조선대학교	

● 혁신연구센터 : IRC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비고
'23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H3 (극한 스케일-극한 물성-이종 집적) 한계 극복 반도체 기술 연구 센터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24	첨단 바이오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양자	AI 기반 중대 분자 연구 센터 휴머노이드 후각디스플레이센터 Beyond-G 글로벌 혁신센터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센터	광주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24	우주항공·해양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통합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공고자료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내용을 숙지



주관연구기관에 먼저 문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보서에 문의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유영단 1877-2041

*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 (공통번호) (042) 869-6829
☎ (042) 869-6826, 6822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 분	SRC		ERC		MRC
	자연 과학 단	생명 과학 단	공학 단	ICT · 융합연구단	의약학 단
선도연구센터	6559	6537	6542	6568	6053